

## 5. 地價公示 및 土地等の 評價에 관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6-99號 1996. 3. 30

### 1. 개정이유

1995년 12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법률에서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검증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의 100%와 수용비 및 수수료등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시험합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무수습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실시로 감정평가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라. 현행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개인사무소의 업무중 보상평가 업무범위를 확대(합동: 10억원→30억원 이하, 개인: 5억원→10억원 이하)하는 한편, 대출평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공정하고 책임있는 감정평가를 유도함.

마.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감정평가사 1인당 2천만원인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위법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현행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토지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지가조사1과(500-4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